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3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6.
3. 회부연월일 : 2025.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18조제3항 신설),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안 제1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생략) <신설>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u>지원사업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 <u>지원사업</u> <u>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u> ----- --.

현행법 제18조제1항¹⁾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부는 ①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솔루션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②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제조분야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현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데이터·AI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등을 실시 중임.

[표 1]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년 예산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²⁾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10,888
데이터인프라구축 ³⁾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제조분야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플랫폼(제조 DTaaS) 구현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데이터 및 AI 활용 촉진	3,186
클라우드기반솔루션 개발 ⁴⁾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종합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화 현황 분석 결과 도출	200

자료: 중소기업부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일반회계, 2111-304

3)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사업(일반회계, 2111-305)의 내역사업

4)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사업(일반회계, 2135-503)의 내역사업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 사업에 더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CRM⁵⁾, SCM⁶⁾, MES⁷⁾ 등 국내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월 이용료가 시스템 기능 및 사양 등에 따라 월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점,⁸⁾ 향후 디지털 전환의 고도화 및 기술의 복잡화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이용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화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 기업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2]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여부 조사(2024년)

응답기업수(개)	시스템(%)						
소계	SCM	MES	POP	전자입찰 시스템	CRM	GW	홈페이지
4,300	16.6	5.8	9.4	13.1	42.7	13.8	17.2

주: 1. ('24년 조사대상)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연매출 5억원 이상 중소기업 4,300개사, 대기업(대조군) 300개사, 지원기업 400개사

2. 정보시스템 가격은 미조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시스템

6)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시스템

7)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8) 국내 포털서비스(2025년 8월 검색)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 중인 유사 사업의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현행법 제18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도 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례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⁹⁾를 근거로 소상공인의 매출·재고관리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연 사용료(지원한도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¹⁰⁾을 실시 중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현행법 제18제1항의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조항으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첨부 [참고자료] 참고

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 즉 제조업 등 특정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가능 범위를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전반으로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특정하는 것은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취지 및 향후 중소기업 업종별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국가 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업종별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22년-'21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증감률
전업종	7,713,895	(100.0)	8,042,726	(100.0)	328,831	(4.3)
농림어업	102,553	(1.3)	110,914	(1.4)	8,361	(8.2)
광업	2,527	(0.0)	2,479	(0.0)	-48	(-1.9)
제조업	617,517	(8.0)	630,366	(7.8)	12,849	(2.1)
전기·가스·증기업	125,618	(1.6)	143,652	(1.8)	18,034	(14.4)
수도·하수·폐기업	12,667	(0.2)	13,493	(0.2)	826	(6.5)
건설업	549,913	(7.1)	580,355	(7.2)	30,442	(5.5)
도·소매업	1,935,153	(25.1)	2,097,327	(26.1)	162,174	(8.4)
운수업	645,272	(8.4)	667,704	(8.3)	22,432	(3.5)
숙박·음식점업	869,558	(11.3)	884,473	(11.0)	14,915	(1.7)
정보통신업	169,497	(2.2)	193,509	(2.4)	24,012	(14.2)
금융·보험업	59,791	(0.8)	61,830	(0.8)	2,039	(3.4)
부동산업	1,271,654	(16.5)	1,223,606	(15.2)	-48,048	(-3.8)
전문·과학·기술업	283,261	(3.7)	310,814	(3.9)	27,553	(9.7)
사업시설관리	175,996	(2.3)	185,362	(2.3)	9,366	(5.3)
교육서비스업	254,254	(3.3)	272,184	(3.4)	17,930	(7.1)
보건·사회복지업	81,733	(1.1)	84,628	(1.1)	2,895	(3.5)
예술·스포츠·여가업	155,058	(2.0)	161,055	(2.0)	5,997	(3.9)
협회·기타서비스업	401,873	(5.2)	418,975	(5.2)	17,102	(4.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2024.8.) 중 발췌

셋째, 개정안 제18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생략)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④ ----- -----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	개정안
정한다.	<u>사용료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u> -----.

현행법 제18조제3항이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 체계적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개정안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를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가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산업·분야별 정책 환경, 정책 수요 등에 맞게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과 같이 위임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의처
02) 6788-5467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중기부)

□ 지원근거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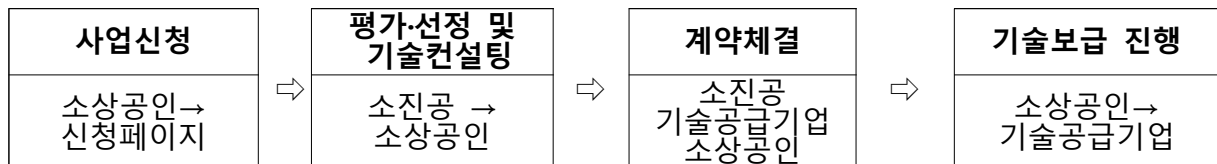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목적)**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주문(키오스크),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SW) 등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절차)**



□ '25년 지원조건 : 유형에 따라 50~100% 국비 지원

구분	일반형		렌탈형	선도형	SaaS형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일반 스마트기술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연 렌탈료 지원	스마트기술 패키지, 조리로봇 등 주문제작 기술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S/W서비스 연 사용료 지원
지원한도	500만원		350만원	1,000만원	30만원
국비 지원비율	50%	테이블오더,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	70%	70%	100%
	70%	기타 기술			(프랜차이즈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보급 시 90%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장애인사업주) : 80%				적용)

□ 지원근거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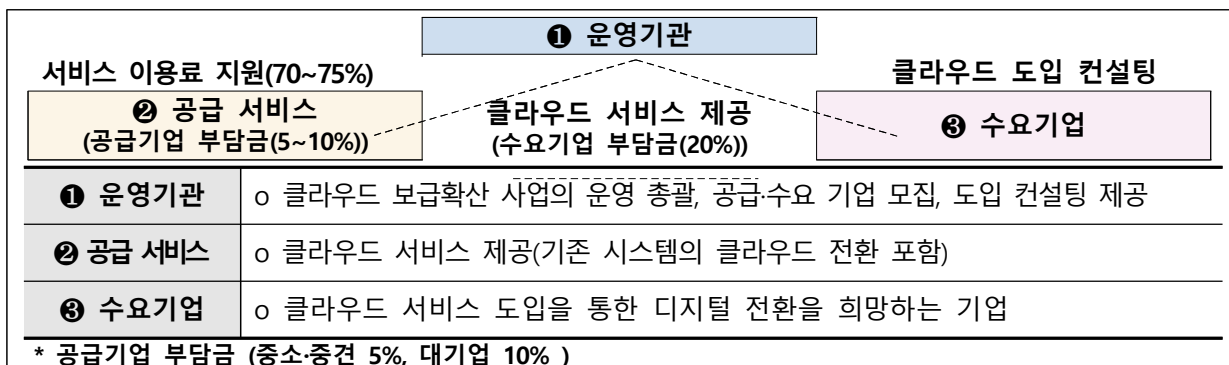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및 이용료 등을 종합 지원하여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지원

○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의 환경(산업 분야, 기업규모 등), 이용 희망 서비스(그룹웨어, ERP 등)를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도입지원

○ (전환 지원)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환경 구축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이관, 이용자 교육 등의 초기 도입비 일부 지원

○ (이용료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Pool 제품 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클라우드 도입 및 운용비 최대 10백만원(일반지원)
또는 80백만원(집중지원) 중 택1, 자부담금 20%(현금, 공통사항)

※ 서비스 이용금액의 최대 75%까지 정부 지원 및 공급기업 5~10%, 수요기업 20% 부담

< 지원 부문별 비교표 >

구 분	집중지원	일반지원	비고																
지원금액	최대 80백만원 (이용료 50백만원 + 심화컨설팅 30백만원)	최대 10백만원																	
컨설팅	심화 컨설팅 (30백만원) ※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관 및 활용 전략 마련	데이터 기반 컨설팅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간 컨설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추천 및 매칭	* 데이터 기반 컨설팅 : 클라우드 추천 중심, 컨설팅 기간 15일 이내 * 심화 컨설팅 : 클라우드 전환 및 활용 지원 중심																
선정절차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 집중지원 선정 제외 시 일반지원으로 변경하여 선정	서면평가	운영 일정에 따라, 선정절차 변경 가능																
지원기업수	20개사	232개사 이상	-																
자부담금	<table><tr><td>정부지원금</td><td>자부담금 합계</td><td>수요기업</td><td colspan="2">공급기업</td></tr><tr><td>75%</td><td>25%</td><td>20%</td><td>중소/중견</td><td>5%</td></tr><tr><td>70%</td><td>30%</td><td>20%</td><td>대기업</td><td>10%</td></tr></table>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수요기업	공급기업		75%	25%	20%	중소/중견	5%	70%	30%	20%	대기업	10%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수요기업	공급기업																
75%	25%	20%	중소/중견	5%															
70%	30%	20%	대기업	10%															

<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예시) >

구분	주요 기능
ERP	영업, 판매, 재무 관리
그룹웨어	메신저, 영상회의 등
보안	웹 악성코드 감지, 해킹 방지 등
CRM	고객관리 솔루션
전환료 지원	수요기업 맞춤 데이터 이관, 이용 환경 설정, 이용자 교육 등 클라우드 전환 지원
인공지능 활용	감성분석,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질문 생성기, 반말체 변환, 사투리 변환, 고객만족도 분석, 챗봇, 문서 요약 등